

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번호	제479호
의결년월일	2001. 4. 24 (제86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4. 23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제안이유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·조성하여 기금의 원활한 관리와 운용을 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사용(안 제2조 및 제3조)
-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4조)
- 기금관리공무원(안 제5조)
-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및 결정(안 제6조 및 7조)

-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, 중단, 폐지 승인(안 제8조)
-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(안 제9조 및 제10조)
- 기금의 운용계획(안 제11조)

□ 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체서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출연금(연 4억원, 2001~2005년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경기도 및 시의 출연금
2. 경기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
3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
5.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
6.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
7.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

제3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
2.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
3.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
4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(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)
5.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·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.

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하되, 지방재

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
1.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의 예치
2. 국채·공채,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
3.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

④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기금운용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제6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·기관·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
2.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
3.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
4.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
5.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·기관·단체

제7조(지원신청 및 결정)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·기관·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.

③시장은 기금의 적립금이 10억원이 될때까지는 당해연도 이자수익금과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, 중단, 폐지 승인)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·기관·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, 중단,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) ①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·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

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.

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

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- 1.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
- 2.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
- 3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
제10조(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 ①시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

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

제11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- 2.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결산 및 보고) ①기금관리공무원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)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출연금)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한다. 다만, 매연도의 출연금액을 증액하여 출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